

심사보고서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700호
----------	-------

2017. 10. 24.(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다.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7일

-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은 보건복지부 「2018~2020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사업자 공모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
- 위탁기간 종료('17.12.31.)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사무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18.01.01.~'20.12.31.)
- 선정기준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사업자 공모지침」요건을 충족한 단체
 - 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연구기관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아동복지관련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 (현)수탁기관 : (사)일하는공동체('15.1.1~'17.12.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예 산 액 : 169,260천원(국비 84,630, 도비 84,630)
- 주요사무
 -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평가지원
 - 민간자원 개발·연계, 교육·조사 연구사업
 - 충청북도 특성화 시책사업 추진 지원
 -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업무 등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가.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2018~2020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사업자 공모지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사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종합의견

-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은 시·군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운영·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종합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시·군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철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수시 지도 점검으로 지원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할 것임.

참고 ①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 시군별 시설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시설수	185	77	36	9	7	3	9	4	7	9	18	6
아동수	5,321	2,256	1,057	217	184	77	241	118	198	252	551	170

□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지원금액	사업내용
계	9개 사업	19,804	
1	종사자 감수성향상 워크숍 (도비 100%)	15	시설장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사례발표 등
2	운영비 지원 (국 50%, 도 15%, 시군 35%)	11,346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시설별 월 4,188천원 ~ 5,871천원
3	아동복지교사 지원 (국 50%, 도 15%, 시군 35%)	2,204	전문프로그램(영어,독서 등) 지원
4	이용아동급식 지원 (도 6%, 시군 94%)	5,273	급식 제공(4,000원/1식/월 22일)
5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도 40%, 시군 60%)	495	월 100천원/1인 지원
6	환경개선 (도 40%, 시군 60%)	150	노후시설 환경개선 5,000천원/개소
7	어깨동무 한마음페스티벌 (도비 100%)	30	오감체험활동, 공연·작품발표회 등
8	지역아동센터 총복지원단 (국 50%, 도 50%)	169	컨설팅, 평가지원, 종사자교육, 민간자원연계지원 등
9	운영비 추가지원 (도 40%, 시군 60%)	12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 시설별 연 600천원 ~ 900천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지휘·감독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4.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2015.3.27.)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업무주관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과·소장이 된다.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2018~2020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사업자 공모지침」**

⑦ **지원단의 위탁**

- (위탁기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평가결과(기존 수탁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의 계약을 갱신하여 위탁할 수 있음

(계약기간) '18.1. ~ '20.12.(3년)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수탁자의 선정을 위해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함

-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함

- 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②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④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위탁계약)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00
----------	-----

제출연월일 : 2017년 9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위탁기간 만료('17.12.31.)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17.9.15.)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18. 1. 1. ~ '20. 12. 31.)
- 위탁범위 :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업무 전반
- 수탁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연구기관
 - 민간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충청북도 관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서 아동복지 관련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 주요사무
 -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평가지원
 - 민간자원 개발·연계, 교육·조사 연구사업
 - 충청북도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
 -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업무 등

3. 참고사항

가. 現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현황

- 지원단 운영 경과
 - '11. 1월~'12. 12월 : 공개경쟁 최초 지정위탁
 - '13. 1월~'14. 12월 : 공개경쟁 지정 위탁
 - '15. 1월~현재 : 공개경쟁 지정 위탁
- 수탁기관 : (사)일하는공동체('15. 1. 1. ~ '17. 12. 31.)
- 사업비('17년) : 169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기관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34
- 조직·인력 : 3명(단장 1, 팀장 1, 직원 1)

나. 관계지침 및 조례 : 별첨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19호(2017. 9. 15.)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지역아동센터 총칭북도지원단 -
운영 민간위탁 계획



보 건 복 지 국
복 지 정 책 과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계획

- ◇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단장 이창희, 49세)의 위탁기간 만료('17.12.31.)에 따라 효율적인 민간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최적의 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합니다.
 - 공개모집/민간위탁(3년)/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5인이내) -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19('17.9.15), 시도지원단 운영지침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18. 1. 1. ~ '20. 12. 31.(3년)
- 위탁범위 :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업무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위탁사업비 : 169백만원 정도(국비 50%, 도비 50%) * 변동가능
- 위탁사무
 -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평가지원
 - 민간자원 개발·연계, 교육·조사 연구사업
 - 충청북도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
 -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업무 등

< 現 수탁자 현황 >

- 수탁자 : 사단법인 일하는공동체 (대표 박종효)
- 수탁기간 : '15. 1. 1. ~ '17.12.31. (3년간) ※ '11.1.1~ 현재까지
- 사업비 : 169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조직·인원 : 3명 (단장1, 팀장1, 직원1)
- 사무실 :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34(산남동)

□ 추진절차

① 의회동의	· 추진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의회동의	'17.9~11월
② 수탁운영 공고	· 방법 : 공개모집(15일 공고) · 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연구기관, 도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17.11월
③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개최	· 구성 : 관련 공무원 포함전문가 5인 이내 · 심사 :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 · 결정 : 최고 득점자 선정	'17.11~12월
④ 협약체결	· 협약체결 및 공증	'17.12월

① 의회동의

- 동의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 4조 제3항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③ >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동의시기 : '17. 10~11월 임시회기중

② 수탁공고

- 공고기간 : '17. 11월 (15일간)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정 (고득점자 선정)
-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충청북도 관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서 아동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수탁조건
 - 관계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
 - 사업공간 확보 및 임대운영시 임대보증금의 수탁기관 부담
 - 현 직원의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

③ 수탁심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17.11~12월

- 구성인원 : 5인 이내

※ 신청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

- 심사항목

- 위탁단체 기본요건(30) : 사업취지,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 등
- 사업수행능력 (30) : 사업추진 경력 및 사업수행 능력, 성과
- 단체 자격 요건 (30) : 기관의 신뢰성, 수행인력 전문성
- 예산운용 능력 (10) : 예산 책정의 합리성

○ 계획설명 : 공모기관별 각 20분 이내

○ 수탁자 선정 : 최고 득점기관, 수탁신청자가 2명 미만이거나
협약대상자 협약결렬시 재 공모

④ 협약체결

○ 체결 시기 : '17. 12월

○ 내 용 :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업무 인계·인수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7. 10~11월

○ 수탁운영자 공고 : '17. 11월 (15일간)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17. 11~12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17. 12월

○ 위·수탁사무 개시 : '18. 1. 1.

붙임 관련지침 및 조례 발췌 1부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안내

1.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8~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안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 붙임을 참고하여 시도별 위탁절차 계획 등을 수립,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시도지원단 위탁결과를 2017. 12.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안내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가족담당관),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과장), 대구광역시(여성가족정책관), 인천광역시(아동청소년과장), 광주광역시(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울산광역시(복지인구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여성아동청소년과장), 경기도지사(아동청소년과장), 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 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주무관 박영호 행정사무관 박광돈 아동권리과장 임대식 전결 2017. 9. 15.

협조자

시행 아동권리과-6619 (2017. 9. 15.) 접수 복지정책과-20916 (2017. 9. 15.)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439 팩스번호 044-202-3968 / emile05@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